

광역체육회 규정

제 1 조 규정의 근거

본 규정은 본회정관 제()조(광역체육회)에 근거하여 광역체육회 규정을 제정한다.

제 2 조 목적

본회는 미국내 지역을 9 개의 광역지역으로 분할하여 광역체육회를 설치하고 각 광역체육회 별로 소관지역체육회를 규합하여 협의체 형식의 단체로 구성. 소관지역 지역체육회 관리하고 원활히 소통케 하여 공동사업들을 주관하여 각 지역체육회를 활성화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다.

제 3 조 소속 및 명칭

1 항, 소속

가) 광역체육회는 본회의 산하단체이다.

나) 광역체육회는 소관지역에 있는 본회가 인준한 지역체육회를 산하단체로 둔다.

2 항, 명칭

명칭은 재미대한 000 장애인체육회 라고 한다. 000 는 동남부, 동중부, 동북부, 중동부, 중서부, 중북부, 서남부, 서중부, 서북부 9 개 단체이다.

제 4 조 본부

다수의 주를 대표하는 광역체육회 본부는 최초의 광역체육회가 설립된 지역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광역체육회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이전 할 수도 있다.

제 5 조 법인등기

광역체육회가 최초 설립지가 소재한 주에 소재한 주에 비영리법인을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그러나 이사회에서 타주에 등록하는 것을 결정할 경우 옮길 수도 있다.

제 6 조 사업

1 항, 광역체육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가) 소관지역이 전체참가하는 광역체육대회 주최 및 주관

- 나) 각 경기단체 지도육성 및 지휘감독
- 다) 각 지역체육회의 대회개최 및 주관지원을 한다.
- 라) 광역체육회 및 소관지역체육회의 활동을 홍보하고 활성화를 위해 지역체육회와 규합한다.
- 마) 소관지역내 지역체육회간에 잘 소통될 수 있도록 중재한다.

제 7 조 광역체육회의 권한

- 1 항, 신규지역체육회가 본회에 가맹하고자 할 때에는 광역체육회에서 가입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하고 접수받아 심의하며 인준신청서와 함께 본회에 인준신청을 한다.
- 2 항, 소관지역에서 지역체육회와 가맹단체가 분쟁이 생겼을 경우 광역체육회장은 중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3 항, 소관지역 지역체육회의 연합사업을 승인한다.

제 2 장 구성 및 조직

제 8 조 광역체육회 본부

- 1 항, 광역체육회를 소관지역 전체를 대표한다.
- 2 항, 본회의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본회의 산하단체도서 지휘감독을 받는다.
- 3 항, 광역체육회는 본 규정과 회칙에 준하여 자체정관과 세칙을 정하여 운영한다.

제 9 조 조직

광역체육회의 조직은 회장, 부회장, 감사 각 분과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1 항, 임원은 회장 1 인, 부회장 5 명, 총무국장을 임원으로 둔다.
- 2 항, 감사는 1 인, 필요에 따라 2 인까지 선출한다.
- 3 항, 회장이 필요한 만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 10 조 광역체육회 임무

- 1 항, 회장
 - 가) 회장은 해당 광역체육회 이사회에서 선출된다.

- 나) 회장의 자격은 지역회장 출신이어야 한다.
- 다) 회장의 임기는 2 년이며 1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라) 회장 광역체육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- 마) 광역체육회가 1 개 지회밖에 없을 경우에는 임기는 1 회밖에 할 수 없으며 차기회장은 본회,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2 항, 부회장

- 가) 각 지역체육회장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.
- 나) 당연직 부회장 외에도 부회장 영입이 필요시에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임명동의를 받아야 한다.

3 항, 감사

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1~2 명을 둘 수 있다.

4 항, 총무국장

총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광역체육회의 모든 행정업무(사무, 재무등)을 총괄한다.

5 항, 분과위원장

각 분과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판단에 따라 설치, 운영할 수 있다.

제 11 조 이사

이사는 당연직이사와 추대이사가 있다.

1 항, 당연직이사

회장, 부회장을 포함하여 총무국장은 당연직이사가 된다.

2 항, 추대이사

회장이 당연직이사의 동의를 얻어 추대하며 그 수는 당연직이사의 수의 1/2 이하로 한다.

3 항, 이사의 임기

이사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하고 연임에 제한이 없다.

제 12 조 임원 및 이사의 피임자격

지역체육회 규정과 같이 한다.

제 3 장 이사회의

제 13 조 이사회의 구성

- 1 항,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.
- 2 항, 이사회는 당연직이사와 추대이사로 구성된다.
- 3 항, 이사회는 간사를 두어 그 업무관리를 하며 총무국장이 간사를 대신할 수 있다.

제 14 조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.

- 1 항, 예산 및 사업계획 승인
- 2 항, 결산 및 사업보고 승인
- 3 항, 규정개정의 의결
- 4 항, 회장선출 부회장 임명 동의
- 5 항, 제반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심의
- 6 항,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 의결

제 15 조 이사회소집

- 1 항,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.
- 2 항,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21 일 전에 각 이사에게 홍보해야 한다. 다만,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.
- 3 항, 이사 1/3 이상이 이사회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은 요구일로 30 일 이내에 소집한다.
- 4 항, 정기이사회는 매년 1 월경에 개최한다.

제 16 조 이사회 성원 및 의견

- 1 항,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된다.
- 2 항, 이사회의 의결은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한다.

제 17 조 서면결의 이사회의

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의 소집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사회 회의를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.

가) 안건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된다.

나) 서면결의 이사회소집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.

1. 긴급을 요하는 사유
2. 의제 및 의제에 관한 설명
3. 접수처 및 마감일을 명시하여야 한다.

다) 서면결의 이사회의 결과를 모든 이사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.

제 18 조 회기

1 항, 광역체육회의 회기를 재미대한장애인체육회 회기와 같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자체내에서 결정하여 정할 수 있다.

제 19 조 재정

1 항, 기금조성

가) 광역체육회는 기금조성을 하되 계획된 사업에 할 수 있으며 지역체육회 기금조성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.

나) 기금조성시 해당지역체육회와 협의하도록 한다.

2 항, 광역체육회는 지역체육회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없다.

제 20 조 의무

1 항, 회비

각 광역체육회 본회에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 단, 광역체육회가 지역체육회 회장이 같을경우 연회비를 면제한다.

2 항, 총회보고

광역체육회는 매년 정기이사회의 모든 결과를 본회 사무처에 보고해야 한다.

제 21 조 기타

현 규정에 포함되는 사항들은 재미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을 참고로 한다.

제 22 조 광역체육회규정 제정 및 발호

본 광역체육회 정관은 2019 년 월 일 임시이사회에서 제정되었음.